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2. 8. 30.(화) 11:00 < 8.31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8. 30.(화)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김정예 (044-203-5540)
		담당자	사무관 임성관 (044-203-5546)

산업부,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

- 각종 평가, 협의, 진흥 제도 중 기업활동 저해 요인 제거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부처 소관 숨은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. **"숨은 규제"**란 **규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내 평가·협의 절차와 같이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**를 의미한다.

산업부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「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*(22.6.15)」을 기반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입지제도 등 산업부 소관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**하였으며, 이번 **숨은 규제 개선** 방안은 **5번째로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**이다.

* ①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, ②킬러 규제(입지, 환경, 노동 등), ③숨은 규제, ④공공부문 역할 재조정
** ①투자프로젝트(6.15일), ②입지제도(7.20일), ③에너지분야 교육체계(7.28일), ④수소산업(8.30일)

이를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·단체 16개에 규제개선 과제 **발굴-건의-모니터링-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**하였고, 6월 중순부터 숨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소관 부서 검토를 실시하였다.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(22.8.26)와 내부 논의를 거쳐 **1차 개선 과제 8개를 선정하여 개선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구분	개선 과제
평가 협의	①**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 명확화** -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절차 개선 등
	②**LMO 위해성 협의심사 개선** - 위해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협의심사 대상 제외
	③**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** - 가스공사 배관망 운영 정보 공개

구분	개선 과제
진흥 지원	④**전문무역상사제도 운영 개선** - 지정기간 확대(2년→3년) 혹은 중간평가 완화(1년후→2년후)
	⑤**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기준 현실화** - 現매출액 기준(총매출 50%이상)을 투자액 등으로 합리화
	⑥**중소·중견기업 R&D과제 총량 폐지** - 산업부 연구과제 수행 제한(중견5, 중소3) 폐지
	⑦**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 완화** - 실증 특례 신청시 제출 서류 종류 및 항목 간소화
자격 제도	⑧**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** - 기술평가사업 경력자 상시고용 요건(5년 이상 7명) 완화

① 평가·협의 제도

정부부처 법령에 각종 평가 및 협의 절차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, 명확한 소요 기한이 없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등 **기업 투자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**하거나, 불필요한 협의로 **중복적인 부담을 초래**하는 경우이다.

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생산·수입 사업자가 소관부처*에 위해성 심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부처가 관계부처**에 협의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.

* 소관부처 : 사료용(농식품부), 산업용(산업부), 보건의료용(복지부), 식품용(식약처) 등
** 관계부처 : 인체위해성 판단(복지부), 자연생태계 위해성(환경부), 해양생태계(해수부) 등

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은 복수의 부처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 요구에 따라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 개시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. 산업부는 **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**을 위한 **협의심사 합리화 기준**을 **관계부처와 협의**하여 **마련**해 나갈 계획이다.

② 진흥·지원 제도

당초 **산업 진흥이나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**에 대해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**적극 반영**하여 개선하기로 했다.

대표적으로 「**대외무역법**」에 따라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**전문 무역상사를 지정·지원**하고 있으나 **짧은 지정기간(2년) 등으로 인해 기업이 애로**를 겪는 경우이다.

이에 대해 산업부는 **추후 전문무역상사제도 모집 공고시 지정제도를 개선**하는 등 진흥·지원 제도를 합리화해나갈 예정이다.

③ 자격 제도

기관 지정시 적정한 전문성을 보유하도록 전문가 상시고용 등 자격 요건을 두고 있으나, **해당 요건이 과도하고 불합리**한 경우가 있거나 **제한된 기관에게만 특례 자격**을 부여하는 경우도 숨은 규제로 제기되었다.

대표적 예로 기술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**기술평가기관을 지정·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준*이 지나치게 엄격**한 경우이다. 산업부는 **전문가 고용기준을 완화**하여 **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**할 계획이다.

*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상시 고용 의무 존재(기술이전법 시행령)

이 외에도 **인증심사 소요기간 명확화, 중소·중견기업 R&D과제 총량 폐지,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류 부담 완화**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
앞으로도 산업부는 **기업 건의사항** 뿐만 아니라 **자체적으로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을 검토**하여 **숨은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**해 나갈 계획이다.

첨부 : 산업부 숨은 규제 1차 개선과제 세부 내용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첨부 **산업부 숨은 규제 1차 개선과제 세부 내용**

① 평가·협의제도 개선

과제1 :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 명확화

○ **(현황)** 재제조제품 품질인증* 등 일부 인증 제도는 심사기간 규정이 불명확하여 심사 완료 시점 예측이 어려움

*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신청·접수 후 3개월 이내 완료(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7조)

○ **(개선방안)** 불명확한 규정의 절차별 기간설정*을 통해 예측가능성 확보

* 例) 재제조제품 풀질인증의 서류·면접심사 30일 이내, 공장심사 60일 이내(접수 기준)

⇒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등 인증제도별 소요기간 규정 개정

과제2 :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위해성 협의심사 개선

○ **(현황)** LMO 생산·수입 사업자가 품목 소관부처(농식품부 등)에 위해성 심사 신청시 해당부처는 관계부처(환경부 등)에 협의심사 요청

* 소관부처 : 사료용(농식품부), 산업용(산업부), 보건의료용(복지부), 식품용(식약처)
관계부처 : 인체위해성 판단(복지부), 자연생태계 위해성(환경부), 해양생태계(해수부)

**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

- 자연생태계, 해양생태계 위해성에 관한 협의심사 요청은 재량사항이나, 신청을 받은 소관부처는 대부분 협의심사 요청
- 신청 기업의 경우 복수의 부처로부터 중복 자료제출 요구, 심사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개시에 애로

○ **(개선방안)** 환경 위해성 협의심사 대상 합리화 기준 마련 및 투명성·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

⇒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등

과제3 :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

○ **(현황)** 가스 직수입업자가 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할 경우 공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가능여부, 사용량 등에 이견 지속 발생

* 가스공사는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해야 하나, 배관망 운영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협의에 애로(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)

○ **(개선방안)** 가스공사 배관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(정부, 학계·연구계 등)로 구성된 중립적인 검증기구 운영

⇒ **배관이용위원회 구성·운영 및 배관망 운영 정보공개**

② 진흥·지원제도 개선

과제4 : 전문무역상사제도 운영 개선

○ **(현황)** 전문무역상사 지정·지원(대외무역법 제8조의2)중이나, **짧은 지정기간**(現2년) 및 **자격유지 중간평가*** 관련 기업 애로 有

*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1년 후에 자격유지평가: 전년도 수출실적(50만불) 및 타 중소·중견기업의 생산물품 수출 실적(20%) 평가 후 미충족시 지정해제

- 지정기간 및 중간평가 **근거는 전문무역상사 모집 공고**(산업부)에 규정

○ **(개선방안)** 지정기간 확대(現2년→3년) 혹은 중간평가 완화(1년 후→2년 후, 2년 평균 수출실적 평가)를 **모집 공고에 반영**

⇒ **추후 전문무역상사제도 모집 공고시 개선**

과제5 :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기준 현실화

○ **(현황)**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·지원(지능형로봇법 제42조의2)중이나, 포괄적 기준으로 로봇기업들의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선정기준* 제시

*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, **로봇산업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% 이상**

- 로봇분야에 신규 진출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기존 주력 분야 매출액 규모가 클 경우 배제되는 문제 有

○ **(개선방안)** 지정분야(제조로봇, 서비스로봇, 로봇부품 등) 세분화 및 신규 기준 검토 등 지정기준 현실화 추진

⇒ **지능형로봇법 시행령 제29조 개정**

과제6 : 중소·중견기업 R&D 과제 총량 완화

○ **(현황)**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부 R&D 사업의 총량을 제한 중(중견 5개, 중소 3개)

- 예외 조항 중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다부처 협업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우 제한적

*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제8호

○ **(개선방안)** 정상기업인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수행 가능한 산업부 R&D 과제 총량 제한 전면 폐지

* 경영악화 위험이 있는 한계기업의 경우 출연금 매몰 방지를 위해 현행 제한기준유지

⇒ **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개정**

과제7 : 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서류 부담 완화

○ **(현황)**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규제특례 신청기업에게 별지서식에서 정한 규제특례신청서 1부와 7종의 첨부서류* 제출을 요구

* 사업실시계획서와 해당 신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설명자료 외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, 환경·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등 자료

-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취지에 비해 제출 서류 요건이 기업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

○ **(개선방안)** 국민의 생명·안전 보호 등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서류의 종류와 항목 단계적 조정

⇒ **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**

③ 자격제도 개선

과제8 :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

○ **(현황)** 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을 지정·운영하고 있으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

*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상시 고용(기술이전법 시행령)

- 신규 특허법인 등의 경우 인력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아 참여 제한

○ **(개선방안)** 전문가 고용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 유도

⇒ **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**